

## - 지역기업 공공조달 활성화 지원사업 - 기술개발 인증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판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기업 공공조달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개발 인증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울산경제진흥원장

### □ 개요

- 기간 : 2023. 1월 ~ 12월
- 대상 :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을 목표로 하는 관내 중소기업
  - ※ 제품평가가 가능한 양산제품 보유(자사제품, 직접생산증명가능기업)
  - ※ 2023. 1. 1.이후 진행건(소급적용) 및 2023년 연내 인증완료 항목 지원
- 내용 :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성능시험 수수료 지원 ※ 기업선납 후 정산

###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5개사, 기업당 7백만원 이내(기업부담 20% 이상, VAT별도)
- 지원분야

연번	유형	연번	유형
1	성능인증	8	혁신제품
2	우수조달물품지정	9	녹색기술제품
3	신제품 인증(NEP)	10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4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GS)	11	산업융합품목
5	신기술 인증(NET)	12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6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13	재난안전제품인증
7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14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제품

### □ 추진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선정평가	5월 중	정량 50 + 정성 50, 최종 15개사 선정	
기업선정 및 공고	5월 중	홈페이지 공고, 개별 통보	
중간점검	9월	진척관리, 애로사항 접수	
완료보고	11월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등 완료 보고	
지원금 지급	12월		

### □ 기업모집

- 모집기간 : 5. 12.(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을 목표로 하는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및 사업자 소재지 기준, 제품평가가 가능한 양산제품 보유 기업)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 leehw@uepa.or.kr)
- 문의처 : 마케팅지원팀 과장 이희원 052-283-7152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⑦ 견적서 또는 계약서(2023. 1. 1.이후 진행서류)
② 추진계획서 1부	⑧ 공장등록증명서 1부
③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중복지원금지 약약서 1부	⑨ 대표자·기업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⑩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해당시)
⑤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⑪ 보유 산업재산권 등록서(해당시)
⑥ 2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일체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 **서류심사(지원제외) : 신청자격 충족 및 제출서류 여부**

-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접수일 현재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기준
- 최근 2년( '20~ '21)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발표평가(정량 + 정성) : 고득점 순으로 15개사 내외 선정(예산 범위내 선정)**

- 평가일정 : 추후통보
- 평가기준 : 기업현황, 조달경쟁력, 기술현황, 지원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등
- 선정기준(100점 만점)

항목		심사내용		배점
정량 평가	기업현황(20)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시 내 본사와 공장이 같이 있는 경우 (10점)</li> <li>◦ 울산시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경우 (5점)</li> </ul>	10
		업력	◦ 기업 업력(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도 기준)	10
	조달경쟁력(15)	조달준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업체 (6점)</li> <li>◦ 나라장터 등록업체 (6점)</li> <li>◦ 벤처나라 등록업체 (3점)</li> </ul>	15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산업재산권(국내외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li> <li>②국내외규격 ③기술개발제품 ④품질인증 등</li> <li>※ 해당 없을 경우 : 0점</li> </ul>
정성 평가	사업성(50)	지원필요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15
		사업화가능성	◦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및 사업화 방안	20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한 목표 및 기대효과	15
가점(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범 장수기업, 강소기업, 지역스타기업, 벤처기업,</li> <li>◦ U-STAR기업, 이노비즈, 녹색인증기업, 사회적기업,</li> <li>◦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li> <li>◦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새싹기업(창업3년미만)</li> </ul>	해당시 5점	

※ 코로나19에 따른 화상평가 변경 가능, 화상평가에 따른 제품발송료는 기업부담

※ 최종 선정기업 중 결격사유 및 포기기업 발생시 득점순으로 후보기업 선정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 조사 등에 협조하고, 보완요청을 미이행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단계에서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 최초 기업이 제출한 지원과제와 최종 선정과제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 하에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신청 당시 선정되었어도 향후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